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치			
면적			
용도	[] 건설기계대여업용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 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62조)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